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3타경47146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3. 25.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최재호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1. 11. 26. 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2023. 10. 30.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 증 금	차 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주식회 사 더포힐 스에이 치엠	전부	현황조사	평택라 마다양 코르호 텔 전부 운영 임차인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p><비고></p> <p>주식회사 더포힐스에이치엠:현황조사서에 평택라마다양코르호텔 전부에 대한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p> <p>※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p> <p>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p> <p>비고란</p> <p>1. 공부상 '2층 201호'로 기재 되어 있으나, 현황은 특정 호수의 표시가 없음</p> <p>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p>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3타경47146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4-3

평택라마다양코르호텔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향로184번길 3-1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8층 숙박시설

지4층 935.16㎡

지3층 923.37㎡

지2층 923.37㎡

지1층 923.37㎡

1 층 443.29㎡

2 층 873.71㎡

3 층 715.73㎡

4 층 715.73㎡

5 층 715.73㎡

6 층 715.73㎡

7 층 715.73㎡

8 층 715.73㎡

9 층 715.73㎡

10 층 715.73㎡

11 층 715.73㎡

12 층 715.73㎡

13 층 715.73㎡

14 층 631.3㎡

15 층 631.3㎡

16 층 451.38㎡

17 층 451.38㎡

18 층 95.9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05.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574-3
대 1138.5㎡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138.5분의 104.8822

매각지분 갑구순위 12번 윤재용지분 6954.62분의 962.11 전부

감정평가액	151,000,000
-------	-------------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1.26	36,255,000	3,625,500
2회	2026.03.16	25,379,000	2,537,900
3회	2026.04.13	17,765,000	1,776,500
4회	2026.06.08	12,436,000	1,243,600

1. 공부상 '2층 201호'로 기재 되어 있으나, 현황은 특정 호수의 표시가 없음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